

## 안전 및 위생 기준

이발사  
미용사  
미용 시술사/마스터 미용 시술사  
헤어 디자이너  
손톱 관리사  
이동식 차량  
개인 서비스  
학교/강사  
살롱/매장



WAC 308-20-110, 550

2018년 7월



# 목차

## 최소한의 안전 및 위생 기준.

(1) 규정 및 기준 .....	3
(2) 고객과 접촉하는 물품 .....	5
(3) 고객과 접촉하는 물질 .....	5
(4) 화학 물질의 사용 및 보관 .....	6
(5) 쓰레기 및 폐기물 .....	7
(6) 위생/소독 .....	7
(7) 비전기식 도구 및 기구의 소독 .....	9
(8) 전기식 도구 및 기구의 소독 .....	9
(9) 도구 및 기구의 보관 .....	10
(10) 발 스파기 세척 및 소독 .....	10
(11) 머리 받침대, 샴푸 의자 및 시술 테이블 .....	12
(12) 벽, 바닥 및 천장 .....	12
(13) 타월, 리넨, 망토 및 가운 .....	13
(14) 모든 타월, 리넨, 망토, 가운 및 유사 항목 .....	13
(15) 금지된 위험 물질 .....	13
(16) 금지된 기구 또는 관행 .....	13
(17) 출혈 .....	13
(18) 구급상자 .....	14
(19) 화장실 .....	15

## 필수 면허, 등록, 허가, 고객 공지, 최신 검수서 게시

(1) 면허 .....	15
(2) 운영자 면허 원본 .....	15
(3) 강사 면허 원본 .....	15
(4) 학교, 강사, 살롱/매장 및 이동식 차량 면허 원본 .....	16
(5) 개인 서비스 .....	16
(6) 신분증 .....	16
(7) 만료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면허 .....	16
(8) 다른 주에서 발행한 면허 .....	16
(9) 복제 면허 .....	16

## 308-20-110

**학교,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 손톱 관리사, 미용 시술사, 마스터 미용 시술사, 이발사, 강사, 살롱/매장, 이동식 차량 및 개인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및 위생 기준.**

모든 면허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안전 및 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강사와 견습생 트레이너는 학교 또는 견습 살롱/매장에서의 개인 트레이닝이 다음의 안전, 위생 및 소독 기준을 충족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1) 규정 및 기준**

(a) 고객에게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든 장소에는 온수 및 냉수 수도물이 나오는 조제 개수대가 있어야 합니다. 조제 개수대는 화학 물질을 혼합하고 공급품, 도구, 장비 및 기타 재료를 혼합하는 데 사용됩니다. 조제 개수대에는 "공용 아님"이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b) 현장 세탁 시설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c) 고객을 위한 일회용 비누 및 일회용 손 건조 타월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d) 교체형 비누 또는 공용 타월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e) 면허 소지자는 눈에 보이는 아물지 않은 상처, 피부 염증, 발진 또는 기생충에 의한 감염 부위가 있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수행 또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f)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감염 또는 피부에 전염성 질병 혹은 이상, 또는 기생충에 의한 감염 증상이

드러나 있는 면허 소지자는 앞서 언급된 증상을 가지고 있는 동안 미용, 헤어 디자인, 손톱 관리, 이발, 미용 시술 또는 마스터 미용 시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면허 소지자나 고객이 이 하위 섹션의 (e)와 (f)에 언급된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증상을 가진 개인이 서비스를 받거나 제공한 공간, 그리고 업무 및 대기 공간을 포함하여 해당 개인이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장비와 기구는 세척 및 소독되어야 합니다.

(g) 파라핀 왁스와 제모 왁스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액체, 크림 및 기타 조제 화장품은 깨끗하고 닫힌 용기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h) 모든 병과 용기에는 내용물을 나타내는 명백하고 정확한 라벨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독성 물질을 담고 있는 모든 병과 용기에는 그러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i) 파라핀 왁스와 제모 왁스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액체, 크림 및 기타 조제 화장품과 같이 혼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일회용 또는 세척되고 소독된 도포 도구를 이용해 남은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도포 도구는 제품에 다시 담기지 않아야 합니다. 액체는 눌러 짜는 병, 펌프 또는 스프레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고객과의 접촉으로 인해 소독할 수 없는 제품은 해당 특정 고객에게 사용한 후 폐기되어야 합니다.

(j) 연필 형태의 화장품은 사용 전에 깎아두어야 합니다. 연필 깎이는 각 고객에게 사용한 후 세척 및 소독하거나 폐기합니다.

(k) 면허 소지자는 각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직전, 고객에 대한 학생의 작업을 확인하기 전, 또는 흡연, 식사 또는 화장실 사용 후

비누와 온수 혹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세정제를 사용해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합니다.

(l) 서비스가 제공될 고객의 피부는 서비스 전에 비누와 온수로 닦거나 피부 사용이 승인된 소독제 혹은 수분이 없는 손 세정제로 닦아내기 및/또는 스프레이 처리해야 합니다.

(m)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깎는 도구는 각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한 후 즉시 닫히고 차폐된 폐기물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 **(2) 고객과 접촉하는 물품**

(a) 다회용 모포 또는 가운과 고객의 피부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목에 스트립 또는 타월을 두어야 하며 전체 서비스 기간 동안 계속 놓여있어야 합니다.

(b) 고객의 피부에 직접 접촉한 품목이 소독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품목은 매 사용 후 폐기되어야 합니다.

## **(3) 고객과 접촉하는 물질**

(a) 파라핀 왁스와 제모용 왁스는 왁스 서비스 동안을 제외하고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차폐되어야 하며 제조사의 지침에 명시된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합니다.

(b) 파라핀 왁스와 제모용 왁스는 다음의 방식 중 하나를 사용하여 남은 부분이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i) 왁스를 통에서 꺼낼 때마다 새로운 주걱을 사용합니다.

(ii) 왁스를 일회용 스트립에 직접 도포합니다.

(iii) 통에서 왁스를 꺼낼 때 전용 주걱 하나를 사용한 다음 두 번째 주걱으로 왁스를 도포합니다. 첫 번째 주걱은 고객의 피부나 두 번째

주격에 접촉되어서는 안 됩니다.

(iv) 기본 왁스 통에서 한 명의 고객에게 사용할 양을 덜어 둡니다. 이 양은 소형 일회용 용기에 덜어야 합니다. 한 명의 고객을 위한 용기에서는 여러 번 담갔다 빼는 행동이 허용됩니다.

(c) 고객 피부에 접촉되어 사용된 모든 왁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매 사용 후 즉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d) 모든 왁스 통은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세척 및 소독되어야 합니다. 도포 도구는 언제나 왁스 안에 세워두어야 합니다.

#### **(4) 화학 물질의 사용 및 보관**

(a) 고객에 대해 화학 물질 또는 화학 화합물의 사용이 필요한 서비스를 관리하는 경우 모든 면허 소지자는 제조사의 지침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SDS, safety data sheets)에 따른 안전 절차를 준수하여 고객 개인 또는 옷이 상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b) 살롱 매장, 개인 서비스, 이동식 차량 및 학교에서는 사용되는 모든 화학 제품에 대해 제조사가 제공한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 공간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c) 가연성 화학 물질은 점화 가능성이 있는 물건으로부터 떨어뜨려 보관되어야 합니다.

(d) 산화기, 촉매 및 용액 등 위험한 방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화학 물질은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보관되어야 합니다.

(e)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화학 물질 또는 화학 합성물을 사용하는 면허 소지자는 해당 화학 물질을 화재, 폭발 또는 인체에 대한 유해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모든 화학 물질은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보관되어야 합니다.

## **(5) 쓰레기 및 폐기물**

(a) 모든 폐기물은 차폐된 일회용 용기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수행과 관련된 폐기물을 담고 있지 않고 접수처 또는 사무 구역에 위치한 용기는 차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 모든 화학 물질, 가연 물질, 독성 및 기타 유해한 폐기 물질은 현지의 위험 폐기물 관리 규정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c) 모든 폐기물 용기는 가득 찼을 때 비워져야 합니다. 폐기물 용기의 표면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d) 혈액 또는 기타 체액과 접촉된 날카로운 일회용 물건은 면허 소지자, 고객 및 타인을 폐기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절단 또는 찔림 상처로부터 충분히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밀봉 가능하고 고정된(내관통) 라벨 용기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e) 면허 소지자는 서비스가 수행되는 중 항상 밀봉 가능하고 고정된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6) 위생/소독**

미국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는 제품 라벨에 등록 번호를 표시한 소독제를 승인했습니다. 제품의 제조사 사용 지침을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a) 모든 도구 및 기구는 각 고객에 대한 서비스 후 세척 및 소독되거나 폐기되어야 합니다. 제조사의 규격상 소독 및 재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도구와 기구는 각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후

고객에게 전달하거나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도구 및 기구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네일 파일, 화장용 스펀지, 네일 버퍼, 샌딩 밴드, 발가락 분리대 또는 보호대, 오렌지우드 스틱, 일회용 네일 비트. 작업 공간에 사용된 물건이 있는 경우 일단 재사용의 증거로 간주합니다.

(b) 제조사의 지침을 따라 사용한 경우, 파편 제거 후 소독 도구 및 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승인된 방식으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i) 소독되어야 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을 EPA에 등록된 소독제에 완전히 담그거나 분사, 또는

(ii) 미국 식약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등록되어 목록에 포함된 증기 멸균기, 또는

(iii) 미국 식약청 또는 캐나다 인증에 등록되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건조 열 멸균기.

(c) 세척 및 소독된 모든 도구와 기구는 닫힌 비밀폐 용기 또는 UV 멸균기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UV 멸균기는 이미 세척 및 소독된 도구와 기구의 깨끗한 보관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d) 모든 소독 용액 및/또는 소독제는 제조사가 권장하는 강도로 보관되어 효과를 유지해야 하며 외부 물질에 닿지 않아야 하고 항상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 가능한 위치에 두어야 하며 매일 교체되어야 합니다.

(e) 세척 및 소독할 수 없는 물건이 고객 피부에 직접 접촉된 경우, 해당 물건은 각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즉시 폐기물 통에 폐기되어야 합니다. 작업 공간에 이러한 물건이 있으면 일단 재사용의 증거로 간주합니다.

(f) 일회용 보호 장갑은 각 고객에 사용한 후 폐기되어야 합니다.

## **(7) 비전기식 도구 및 기구의 소독**

(a) 실제 서비스에 사용된 모든 도구 및 기구는 각 고객에 사용한 후 다음의 순서로 세척 및 소독되어야 합니다.

(i) 모든 머리카락 및/또는 외부 물질을 제거합니다.

(ii) 비누 또는 세정제와 물로 꼼꼼하게 씻습니다.

(iii) 깨끗하고 맑은 물로 꼼꼼하게 헹굽니다.

(iv)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사용되는 박테리아 박멸, 곰팡이 박멸, 바이러스 박멸 활동이 증명되고 EPA에 등록된 소독제로 소독하거나 이 섹션의 하위 섹션 (6)(b)(ii) 및 (iii)에 따른 증기 멸균기 또는 건조 열 멸균기로 소독합니다.

(b) 빗, 솔, 롤러, 막대기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날카로운 끝이나 뾰족한 부분이 없는 도구 및 기구는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EPA에 등록된 소독제에 완전히 담가야 합니다.

(c) 클립 또는 기타 도구 및 기구를 입에 물거나, 옷, 주머니 혹은 깨끗하지 않은 홀더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d) 고객의 개인 도구 및 기구는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8) 전기식 도구 및 기구의 소독**

전기식 도구 및 기구는 각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한 후 다음의 순서로 소독되어야 합니다.

(a) 머리카락 및/또는 외부 물질을 제거합니다.

(b) 전기식 도구 및 기구 전용으로 생산된 EPA 소독제로 소독합니다.

## **(9) 도구 및 기구의 보관**

(a) 새로운 그리고/또는 세척 및 소독된 도구 및 기구는 다른 모든 물품과 별도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b) 사용된 도구 및 기구는 작업실의 라벨이 표시된 서랍이나 용기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c) 롤러식 보관 용기나 그릇은 세척 및 소독되고 외부 물질이 닿지 않아야 합니다.

(d) 보관 캐비닛, 작업실 및 보관 서랍 또는 세척 및 소독된 도구와 기구에는 파편이 없어야 하며 세척 및 소독된 도구와 기구에 대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 **(10) 발 스파기 세척 및 소독**

(a)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발 스파기" 또는 "스파기"는 순환되는 물을 사용하는 대야를 의미합니다.

(b) 각 고객이 사용한 후:

(i) 발 스파기 대야에서 물을 버린 후 눈에 보이는 파편을 제거합니다.

(ii) 발 스파기의 표면을 비누나 세정제로 닦고 깨끗한 물로 헹군 다음 물을 버립니다.

(iii) 라벨에 있는 제조사의 지침을 따라 EPA에 등록된 세정제로 표면을 소독합니다. 표면은 10분 또는 라벨에 명시된 시간 동안 소독제에 젖은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c) 매일 밤:

(i) 월풀 발 스파기, 공기 분사 대야, "파이프 없는" 발 스파기 및 기타 순환식 스파기의 경우:

(A) 발 스파기 대야 또는 그릇에서 물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파편을 제거합니다.

(B) 발 스파기의 표면을 비누나 세정제로 닦고 깨끗한 물로 헹군 다음 물을 버립니다.

(C) 소독 - 대야를 깨끗한 물로 채우고 적당한 양의 EPA 등록 세정제를 더합니다. 기기를 켜서 라벨의 제조사 지침에 따른 전체 접촉 시간 동안 세정제를 순환시킵니다.

(D) 물을 버리고 깨끗한 물로 대야를 행군 다음 공기로 건조합니다.

(ii) 소독 공정 중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필터 스크린, 주입 분사기 및 기타 제거 가능한 부품.

(A) 발 스파기 대야에서 물을 버린 후 눈에 보이는 파편을 제거합니다.

(B) 필터 스크린, 주입 분사기 및 기타 제거 가능한 모든 부품을 대야에서 제거한 후 남아 있는 파편을 제거합니다.

(C) 솔과 비누 또는 세정제로 제거 가능한 부분을 문지릅니다.

(D) 깨끗한 물로 제거 가능한 부분을 행군 다음 대야에 다시 놓습니다.

(E) 발 스파기의 표면을 비누나 세정제로 닦고 깨끗한 물로 행군 다음 물을 버립니다.

(F) 소독 - 대야를 깨끗한 물로 채우고 적당한 양의 EPA 등록 세정제를 더합니다. 기기를 켜서 라벨의 제조사 지침에 따른 전체 접촉 시간 동안 세정제를 순환시킵니다.

(G) 물을 버리고 깨끗한 물로 대야를 행군 다음 공기로 건조합니다.

(d) 이 섹션의 (c) 및 (d)에서 요구하는 세척 및 소독 시마다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세척 및 소독 시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세척 및 소독 기록은 고객이나 당국 담당자가 요청할 때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e) 간편한 대야 및 재사용 가능한 내부 라이너(비 순환식):

(i) 대야에서 물을 버린 후 눈에 보이는 파편을 제거합니다.

(ii)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깨끗한 솔과 비누 또는 세정제로 대야를 문지릅니다.

(iii) 깨끗한 물로 대야를 헹구고 물을 버립니다.

(iv) 제조사의 지침을 따라 EPA에 등록된 세정제로 대야 표면을 소독합니다. 표면은 10분 또는 라벨에 명시된 시간 동안 소독제에 젖은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v) 물을 버리고 깨끗한 물로 대야를 헹군 다음 공기로 건조합니다.

## **(11) 머리 받침대, 샴푸 의자 및 시술 테이블**

(a) 의자의 머리 받침대는 각 고객에 대한 서비스 후 세척 및 소독되어야 합니다.

(b) 샴푸 트레이 및 의자는 각 샴푸 후 세척 및 소독되어야 하며 항상 안전하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c) 모든 시술 테이블은 세척 및 소독되고 깨끗한 리넨 천으로 덮여 두어야 하며 고객에 대한 서비스 후 교체되어야 합니다.

## **(12) 벽, 바닥 및 천장**

벽, 바닥 및 천장은 필요할 때마다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과도한 얼룩, 곰팡이, 물방울 또는 벗겨진 페인트가 없이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 **(13) 타월, 리넨, 망토 및 가운**

타월, 리넨 또는 가운은 이 섹션에서 명시하는 적절한 세탁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4) 모든 타월, 리넨, 망토, 가운 및 유사 항목**

이러한 항목은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소독 목적으로 사용되는 세제 및 염소 표백제로 세탁기에서 세탁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타월, 리넨, 망토 및 가운은 견고한 면과 상단으로 닫힌 방진 캐비닛에 보관해야 합니다. 지저분한 타월, 리넨, 망토 및 가운은 모두 견고한 면이 있는 바구니 또는 닫히고 공기가 통하는 주머니에 보관되어야 하며 밤이 지나도록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 **(15) 금지된 위험 물질**

제품의 사용. 어떠한 시설이나 학교도 미국 식약청에서 미용 제품으로 금지한 위험 물질이 포함된 미용 제품을 현장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100% 액체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및 염화메틸렌 제품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어떠한 제품도 미국 식약청에서 승인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6) 금지된 기구 또는 관행**

균은살 제거를 위한 면도날이 있는 도구

### **(17) 출혈**

서비스 제공 중 출혈이나 다른 체액의 노출이 있는 경우 면허 소지자 및 학생은 작업을 중단하고 다음의 순서를 따릅니다.

(a)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b) 장갑을 착용합니다.

(c) 소독 용액으로 상처 부위를 씻습니다.

(d) 살균 붕대로 상처 부위를 덮습니다.

(e) 상처가 면허 소지자의 손에 발생했으며, 장갑 또는 손가락 커버로 덮을 수 있는 면적인 경우 면허 소지자는 깨끗한 방수 보호 장갑 또는 손가락 커버를 착용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상처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 소지자는 양손에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f) 모든 오염된 물건을 폐기합니다. 오염된 물건은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하고 해당 봉지를 다른 비닐봉지에 넣은 후 폐기합니다.

(g) 피나 체액과 접촉된 모든 장비, 도구 및 기구는 세척 및 소독하거나 폐기되어야 합니다.

(h) 장갑을 제거합니다.

(i) 다시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비누와 물로 손을 씻습니다.

## **(18) 구급상자**

시설에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고 있는 구급상자가 비치되어야 합니다.

- 소형 붕대(밴드)
- 거즈
- 소독약
- 다음을 포함한 출혈 응급 도구:
  - 일회용 봉지
  - 장갑



## **(19) 화장실**

(a) 모든 장소에는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은 시설 내에 있거나 적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의 인접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b) 시설에 위치한 모든 화장실은 항상 깨끗하고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 **308-20-550**

## **필수 면허, 등록, 허가, 고객 공지, 최신 검수서 게시**

### **(1) 면허**

18.16 RCW 장에서 요구하는 고객 공지, WAC 308-20-555에 정의된 견습 살롱/매장 공지, 그리고 가장 최신의 검수서는 직접 확인이 가능한 공개 공간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 **(2) 운영자 면허 원본**

최신 사진이 첨부된 상태로 시술자 작업실에서 고객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 **(3) 강사 면허 원본**

최신 사진이 첨부된 상태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개 공간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 **(4) 학교, 강사, 살롱/매장 및 이동식 차량 면허 원본**

접수처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 **(5) 개인 서비스**

면허와 고객 공지는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전시해야 합니다.

#### **(6) 신분증**

면허 원본 대신 사용할 수 없습니다.

#### **(7) 만료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면허**

만료되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유효하지 않은 면허는 미용, 헤어 디자인, 이용, 미용 기술, 마스터 미용 기술 또는 손톱 관리의 실습과 관련된 운영자, 강사 또는 사업체에 의해 전시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전시되는 면허는 요청 시 당국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8) 다른 주에서 발행한 면허**

다른 주, 영토 또는 외국에서 발행한 면허는 어떠한 살롱/매장에서도 전시할 수 없습니다.

#### **(9) 복제 면허**

면허 원본이 분실, 도난 또는 달리 파기된 경우 복제 면허를 받을 때까지 복제 면허의 신청을 보여주는 면허청(Department of Licensing)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and Professions Division  
Cosmetology Program  
P.O. Box 9026  
Olympia, WA 98507**

전화번호: (360) 664-6626  
이메일: [plssunit@dol.wa.gov](mailto:plssunit@dol.wa.gov)



워싱턴주 면허청은 모든 이용자에게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시면 [dol.wa.gov/access](http://dol.wa.gov/access)를 참조하십시오(TDD/TYY는 711번에 전화).